

2014년도

행정사무감사계획안



서대문구의회
(행정복지위원회)

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

I 목 적

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위임사무 등 행정사무 전반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,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, 우수 분야는 장려하고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또는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자치행정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.

II 근거법규

- ▣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
- ▣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

III 감사기간 및 장소

- ▣ 기 간 : 2014. 11. 24(월) ~ 12. 2(화) 【9일간】
- ▣ 장 소 : 서대문구청 기획상황실 (3층)

IV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의 범위

- ▣ 감사대상 기관 : 3담당관, 2국, 보건소, 4개동 주민센터, 사업소, 공단
 - 부구청장직속 : 정책기획담당관, 감사담당관, 홍보담당관 (3담당관)
 - 주민 자치 국 : 행정지원과, 자치행정과, 민원여권과, 전산정보과, 교육지원과(5개과)
 - 복 지 문 화 국 : 복지정책과, 사회복지과, 어린신청소년과, 여성가족과, 문화체육과 (5개과)
 - 보 건 소 : 보건위생과, 지역건강과, 의약과, 가좌보건지소 (3개과 1개지소)

- 동 주민센터 : 추후 결정 (4개동)
- 사업소 : 자연사박물관
- 공 단 : 도시관리공단

■ 감사범위 : 2014년도에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

- 주요감사 착안사항 : 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분장사무(구 본청, 보건소, 사업소, 등)” 참조

V 감사위원회 편성

■ 인 원 :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7

■ 총 괄 : 위원장 박상홍 위원 (부위원장 : 이진삼 위원)

- 국 별

위 원	대 상 부 서		사무보조	비고
	국	부서		
전 위 원	(3담당관)	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	전문위원 김창범 의사팀장 권기영 직 원 박미영 권현정 이영순 성기주	
	주민자치국 (5개과)	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전산정보과 교육지원과		
	복지문화국 (5개과)	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른신청소년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		
	사업소	자연사박물관		
	보건소 (3개과 1개지소)	위생과 지역건강과 의약과 가좌보건지소		
	공단	도시관리공단		

- 동 주민센터 감사반 편성

구 분	감 사 위 원	감 사 대 상	비 고
1 반	이경선(반장), 황춘하, 이진삼	연희동, 홍제2동	<2013년도> 남가좌 제1,2동, 북가좌 제1,2동
2 반	김혜미(반장), 홍길식, 장숙이	홍제3동, 홍은2동	

VI 감사일정 등 세부사항

■ 감사일정

구 분	감 사 일 시	감 사 실 시 내 역	비 고
1일차	2014. 11. 24(월)	감사개시 선언 및 공무원 선서 개별 감사 실시	
2일차	2014. 11. 25(화)	개별 감사 실시	
3일차	2014. 11. 26(수)	개별 감사 실시 동 주민센터 감사 실시	
4일차	2014. 11. 27(목)	개별 감사 실시	의회운영위원회 감사실시(15시)
5일차	2014. 11. 28(금)	질의답변 감사 실시	
6일차	2014. 11. 29(토)	휴 회	
7일차	2014. 11. 30(일)	휴 회	
8일차	2014. 12. 1(월)	질의답변 감사 실시	
9일차	2014. 12. 2(화)	질의답변 감사 실시 감사강평 및 종료 선언	

■ 감사도중 감사계획서 변경

- 감사도중 감사일정 조정,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

VII 감사절차 및 요령

■ 감사절차

- 개회선언 및 위원장 인사
- 관계공무원 등 증인 선서
- 간부소개 및 인사
- 감사실시 : 개별서류감사 및 질의답변식 감사 실시
- 필요시 현지 확인
- 감사강평 및 종료 선언

■ 감사요령

- 자료제출 요구
- 요구자료 및 감사위원 수집자료 등을 토대로 개별감사 실시
- 필요시 현지방문 확인
- 관계인 출석증언 : 필요시 관련 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 선서 후 증언 및 참고인 의견 진술
- 감사지적·보완·우수사항 정리 제출

■ 유의사항

- **감사의 한계** :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45조
 -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관한 사항
 -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한 사항
- **제척과 회피** :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46조
 - 감사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신청 및 의결로 감사 참여 배제
- **주의의무 준수** :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47조
 - 피감사기관에 대한 기능과 활동 저해 사항
 - 기밀 누설 사항
- **공개원칙** :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48조
 - 감사는 공개하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

VIII 감사결과 보고

■ 일일보고

- 감사직후 반장은 각 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 의견서를 수합(별첨서식 #1, #2, #3 참조)하여 부위원장에게 제출하고,
- 부위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장에게 보고

■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, 기간, 대상기관, 감사결과 처리의견(시정처리 요구 사항, 건의 및 기타사항, 우수 및 장려사항), 기타 특기사항을 포함하여 작성

■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여 채택

■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후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」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청장에게 이송

IX 감사자료(서류) 제출요구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

■ 감사자료(서류) 제출요구

- 감사를 위한 자료(서류)는 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및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하고,
- 각 감사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별첨 #4서식 [행정사무감사 서류(자료)요청서]에 기재한 후 위원장(의회사무국)에게 제출
- 위원장은 요구자료 목록을 수합한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송부 하고,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구청장에게 송부 및 자료제출을 요구

■ 증인 등의 출석요구

-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적용

■ 기 타

-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적용

X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 수렴

- 의견접수기간 : 2014. 11월중
- 의견접수대상 : 구정의 불합리한 사항, 구민 불편사항, 제도개선 사항 등
- 홍보 방법 : 의회 홈페이지, 지역신문, 현수막 게재 홍보
- 접수 의견 감사방법
 - 위원장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주민의견을 소속 위원 1~2인에게 배정
 - 주민의견을 배정받은 의원은 감사요령에 의거 개별감사 실시 후 감사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주민의견 감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

XI 행정사항

- 감사장 준비 : 의석 배열 순서에 의한 명패 설치 및 방송장비 등 사전 준비
- 감사자료 준비 : 감사자료 준비 및 요구자료 사전 배포
- 감사활동에 따른 경비 및 사무보조비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
- 기타 협조사항 : 구청 준비사항 참조

구 청 준 비 사 항

- 감사장 확보
 - 감사장소 : 서대문구청 기획상황실 (3층)
 - 책상과 의원 명패 배열은 구의회 제1회의실에 준해 설치 (속기사석 포함)
 - 방송장비, 컴퓨터(인터넷 연결), 복사기, 소모품 기타 감사에 수반되는 사무용품 및 장비 등 사전준비
- 행정정보조직원 및 장비 지원(감사기간 중 상시)
 - 감사장 지원 행정정보직원(2명) 지원
 - 각 부서별 요구서류(자료) 및 기타 사항 지원 등
 - 현장 확인 및 동 주민센터 감사 행정차량 지원
- 감사자료 준비 및 제출
 - 감사자료는 각 부서별 구분 및 편철하여 제출
 - 제출기한 : **2014. 11. 5 (수) 까지**
 - 제출부수 : 각 40 부
- 기타사항
 - 기타 감사 시 수반되는 사항 등

(별첨#1)

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

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】

위원명 : (인)

부 서 명	감 사 사 항	시정 및 처리요구사항	비 고

(별첨#2)

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

【 건의 및 기타사항 】

위원명 : (인)

부 서 명	감 사 사 항	건의 및 기타사항	비 고

(별첨#3)

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

【우수 및 장려사항】

위원명 : (인)

부서명	제목	우수 및 장려사항	비고

(별첨#4)

행정사무감사자료(서류) 요청서

성명	의원	소속	행정복지위원회	
연번	요구부서 (해당과명)	서류(자료)명		비고

선 서

본인은 서대문구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구 행정
사무감사(2014. 11. 24 ~ 12. 2)와 관련하여, 행정복지
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,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제4항
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
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,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
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.

2014년 월 일

소 속 :

직 위 :

성 명 :

①